근대 한국(1895-1912)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사건 분포에 대한 연구

A Study through Analyzing Distribution
of Modern Korea Civil Case Rulings of Hansung District Court

곽 지 영 (Kwak, Ji-Young)*
리 상 용 (Lee, Sang-Yong)**

◁ 목 차 ▷

1. 서 론
2.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구성 및 목록 작성
 2.1 민사판결문 양식 변천 및 구성요소
 2.2 민사판결문 목록 작성 및 키워드 분류
3.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사건 분포의 실제
 3.1 연도별 분석
 3.2 사건별 분석
4. 결 론
<참고문헌>

<초 록>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에서 구축한 '구한말 민사판결문 응용시스템(http://khd.scourt.go.kr)'에 수록된 1895년부터 1912년까지의 근대 한국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당시의 민사소송 사건 분포와 사건 양상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민사판결문 양식의 변천, 구성요소 등에 대해 살펴보고, 민사판결문에 있는 사건명, 재판소명, 판결일자 등을 분석항목으로 선정하여, 한성재판소의 민사판결문 6,352건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사건명에서 762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1」에 수록된 사법통계를 기준으로 인사, 토지, 건물, 선박, 금전, 미곡, 물품, 증권, 분묘, 기타 등 10개의 사건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민사판결문의 사건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근대 한국의 격변기에 민사판결문의 양식의 변천과 사건 분포에 대해 개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要語: 경성지방재판소, 근대한국, 구한말, 민사판결문, 한성재판소, 한성부재판소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kkwak@scourt.go.kr)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15년 9월 5일 최초심사일: 2015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0일

www.kci.go.kr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distribution and aspect of civil cases through analyzing the written judgements of Hansung District Court made from 1895 to 1912, which stored in the database system (http://khd.scourt.go.kr) developed by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In this study, the structure, style, requirements and changes of the written judgements were examined, and case name, court name, ruling data were selected for statistical analysis from original images of the judgements in Guhanmal period. As a result, 6,352 written judgements were listed up by using this system. 762 keywords were extracted from case names and the keywords were classified into 10 categories including family register, land, building, ship, money, rice, substitute, security, grave, and others based on judicial statistics of 「Chosun-Chongdokbu statistics yearbook 1911」. Based on these case groups,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written judgements and looked into its featur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overviews the changes in the format of written judgements, as well as the dispersion and characteristics of civil cases during modern Korean history.

Key words: Kyoungsung District Court, modern Korea, Guhanmal period, written judgements, Hansung District Court, Hansungbu District Court

www.kci.go.kr

1. 서 론

법원도서관에서는 2009년 법원기록보존소 소장 자료 중 열람 가치가 높은 1889년에서 1918년까지의 민사판결 원본 151책을 대상으로 '구한말 민사판결문 응용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그 동안 서고에 자료로 묵혀 있었던 당시의 민사판결문을 웹상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설계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판결문을 원문텍스트 방식이 아닌 이미지 방식으로 제공하여 실질적인 활용에는 어려움이 많다.

근대 한국 시기에 해당하는 이 1889년에서 1918년까지의 기간은 약 30년에 불과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분제 봉건시대에서 근대화로 넘어가는 근대 한국의 변혁기이자 급변기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작성된 민사판결문은 그 시기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이 지닌 특수성과 사료적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주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등 특정 시기의 민사분쟁, 전세권, 도지권 등 특정 주제와 관련된 개별적인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1],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전반에 대해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895년부터 1912년까지의 근대 한국 시기에 「재판소구성법」

1) 권재문, "전세권의 법적 성질: 구한국기 민사판결에 나타난 전세관습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9(2014) ; 이승일, "대한제국기 외국인의 부동산 전당 및 매매와 민사 분쟁: 헐버트의 가옥 분쟁(1900-1902)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9(2014) ; 이승일, "민사판결문을 통해 본 근대 한국의 도지권 분쟁과 처리: 평안도·황해도 지역의 분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9(2013) ; 김항기, "갑오개혁기(1894-1896) 민사소송제도의 시행과 '사권'신장," 「한국근현대사연구」 67(2013) ; 문준영, "구한국기의 임대차 분쟁과 전세 관습: 민사판결자료를 통한 접근," 「법사학연구」 48(2013) ; 문준영, "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법사학연구」 46(2012a) ; 문준영,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법학논고」 39(2012b) ; 문준영,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판결원본철을 통해 본 한말의 민사분쟁과 재판," 「법학연구」 22-1(2011a) ; 문준영,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권력: 관습에 관한 재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2-4(2011b) ; 이영록, "광무·건양기 부동산 이중매매 및 이중전당에 관한 연구: 고등재판소 및 평리원 판결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4(2011).

www.kci.go.kr

(1895)에 따라 설치된 최초의 근대식 재판소로서 근대 사법제도 하에 전문 법관이 내린 판결문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한성재판소의 민사판결문 6,352건을 대상으로 그의 사건 분포와 현황 분석을 통해 당시 민사소송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구성 및 목록 작성

한성재판소는 한성재판소, 한성부재판소, 경성지방재판소 등을 포괄하는데, 1895년부터 1912년까지 이곳에서 나온 민사판결문은 한성재판소 3,343건, 한성부재판소 1,228건, 경성지방재판소 1,863건 등 총 6,434건이다. 이 중 경성지방재판소의 인천지부 판결문 82건은 인천지역이 관할구역이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총 6,352건의 민사판결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민사판결문 양식의 변천 및 그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한성재판소의 민사판결문 6,352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1」에 의거하여 분류 작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2.1 민사판결문 양식 변천 및 구성요소

2.1.1 민사판결문 양식 변천

조선시대의 재판은 법률에 의거하여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고, 백성이 관아에 소지(所志)를 올려 청원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 주로 지방관인 수령들이 재판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은 부족하였으며, 판결문의 형태로 내려준 것이 아니라 백성이 올린 소지에 대하여 관아에 내려준 처결문인 입안(立案) 또는 제사(題辭) 정도가 있었다.[2)]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서구의 재판제도처럼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2) 신평, "한국의 전통적 사법체계와 그 변형," 「법학논고」 28(2008), 482-487.

www.kci.go.kr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반포되면서부터이다. 그때부터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었고, 1899년의 「재판소구성법 개정안」과 같은 사법 근대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재판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의 원본은 판사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근대적 재판소인 한성재판소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여전히 개혁 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일본이 사법권을 지배하여 재판제도는 일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3)]

법원도서관의 '구한말 민사 판결문 응용시스템'에는 1889년부터의 판결문이 남아 있는데 그 명칭 또한 다양하게 붙어 있다. 이 중 한성재판소 판결문에 정형화된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명칭은 '판결서(判決書)'이다(<그림 1>,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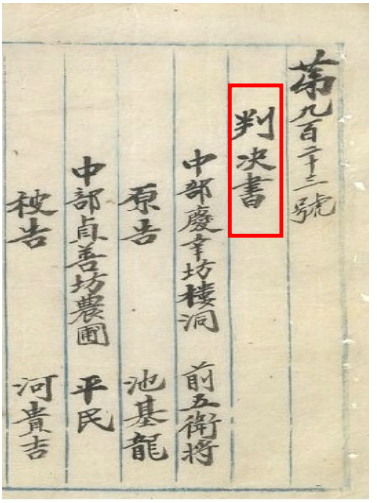

<그림 1> 표제 이미지 예시: 판결서
출처: 한성재판소 1896년 민사판결문원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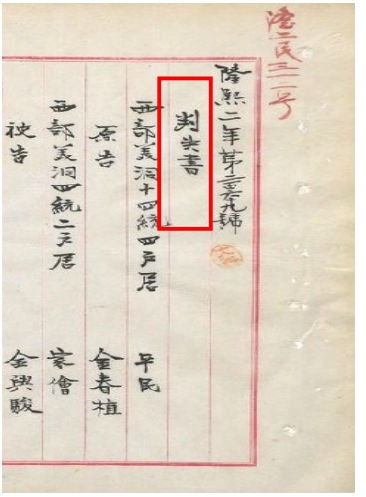

<그림 2> 표제 이미지 예시: 판결서
출처: 한성재판소 1896년 민사판결문원본철

그 외 지방재판소의 기록들은 한성재판소에 비해 수량 자체가 적었으며, 판결

3) 사법사편찬위원회, 「역사속의 사법부」 (서울: 사법발전재단, 2009), 26-29.

www.kci.go.kr

문 제목도 판결서 외에 재판언도서(裁判言度書)(<그림 3>), 선고서정본(宣告書正本)(<그림 4>), 궐석판결서(闕席判決書)(<그림 5>), 화해조서(和解調書)(<그림 6>)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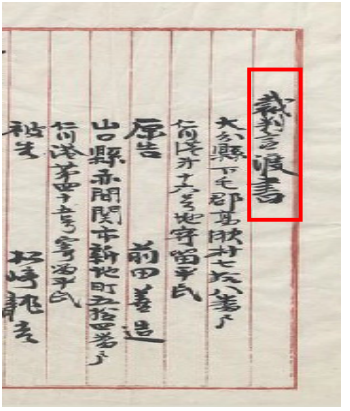

<그림 3> 표제 이미지 예시: 재판언도서
출처: 인천항일본영사재판소 1889년 민사판결문원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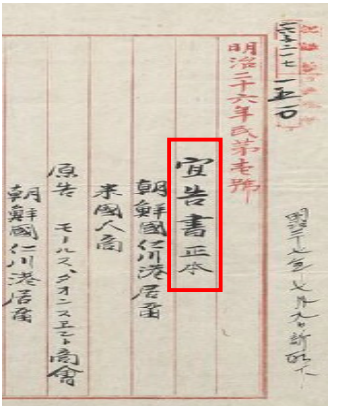

<그림 4> 표제 이미지 예시: 선고서정본
출처: 인천항일본영사재판소 1893년 민사판결문원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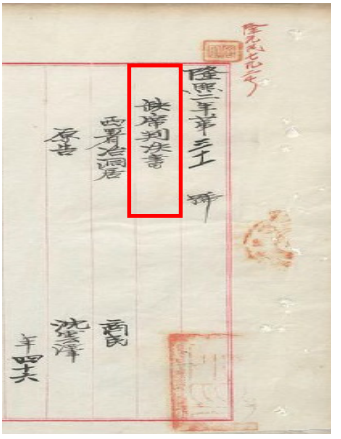

<그림 5> 표제 이미지 예시: 궐석판결서
출처: 한성재판소 1908년 민사판결문원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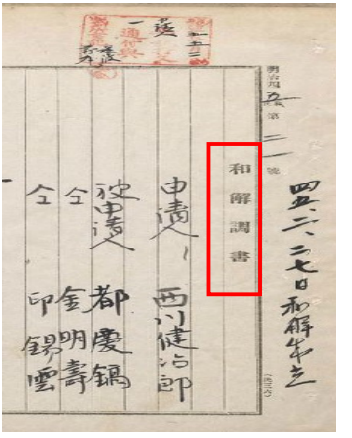

<그림 6> 표제 이미지 예시: 화해조서
출처: 경성구재판소 1912년 민사판결문원본철

www.kci.go.kr

판결서에 기재된 언어를 살펴보아도 시기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기 판결문은 한지에 붓으로 작성하고, 한자로 기록하였다. 그 후 국한문이나 일어와 한문을 혼용하기도 하였는데, 일제강점 이후에는 완전히 일어로 작성되었다. 채권・채무소송에 관한 판결문 사례를 들어서 표기된 언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문만 사용한 경우이다. <그림 7>은 1895년 한성재판소의 판결문 사례로서, 한문을 사용하여 한지에 붓으로 작성한 것이다. 초창기의 판결서는 주로 한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판결문 역시 전체가 한문으로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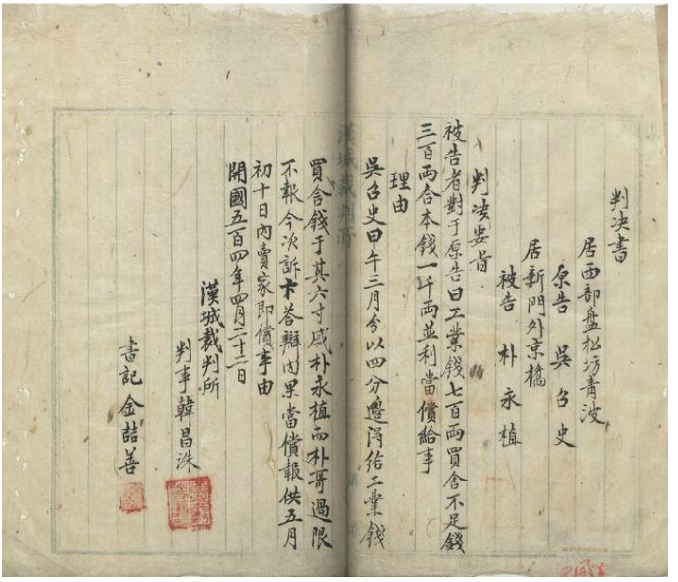
判決書
居西部盤松坊青波
原告 吳召史
居新門外京橋
被告 朴永植
判決要旨
被告者對于原告曰工業錢七百兩買含不足錢
三百兩合本錢一千兩並利當償給事
理由
吳召史曰午三月分以四分邊得給工業錢
買含錢于其六寸感朴永植而朴哥過限
不報今次訴卞答辯內果當償報供五月
初十日內賣家即償事由
開國五百四年四月二十二日
漢城裁判所
判事韓昌洙
書記金喆善

<그림 7>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이미지
출처: 한성재판소 1895년 민사판결문 원본철

둘째, 국한문을 혼용해서 사용한 경우이다. <그림 8>은 1898년 한성부재판소의 판결문 이미지인데, 국한문을 혼용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8>의 사각표시를

www.kci.go.kr

보면 '判決의 要旨'와 같이 단어는 한자로 적고 조사나 어미를 근대 한글로 작성한 형태이다. 비록 주요 단어 등은 한자로 작성되어 있을지라도 공문서에 한글이 나오는 점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판결문 전체가 한글로 작성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판결문은 196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한글전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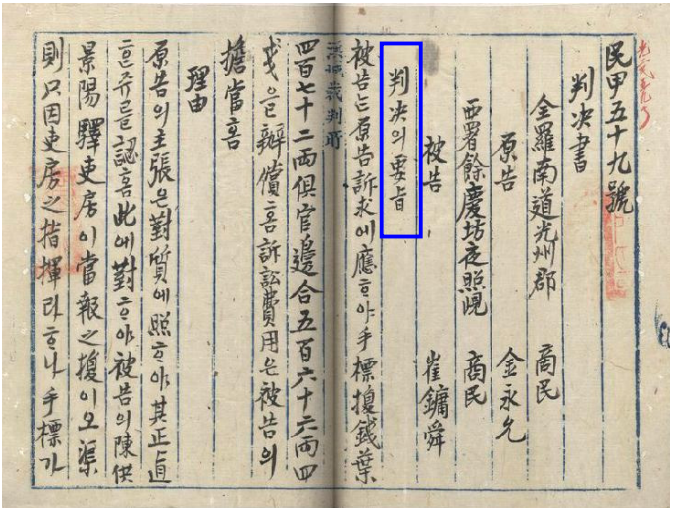
民甲五十九號
判決書
全羅南道光州郡 商民
原告 金永允
西署餘慶坊夜照峴 商民
被告 崔鏞舜
判決의要旨
被告는原告訴求에應ᄒᆞ야手標擡錢葉
四百七十二兩俱官邊合五百六十六兩四
戔을辦償ᄒᆞ옴訴訟費用은被告의
擔當홈
理由
原告의主張은對質에照ᄒᆞ야其正直
ᄒᆞᆫ쥬를認홈此에對ᄒᆞ야被告의陳供
景陽驛吏房이當報之擡이오渠
則只因吏房之指揮라ᄒᆞ나手標가

<그림 8> 한성부재판소 민사판결문 이미지
출처: 한성부재판소 1898년 민사판결문 원본철

셋째, 일어와 한문을 혼용해서 사용한 경우이다. <그림 9>는 1908년 경성공소원의 판결문 이미지인데, 일어와 한문을 혼용하여 작성하였다. 단어는 한자로 적고 조사나 어미를 일본어로 작성한 것인데, 일본어 옆에 한글로 그 뜻을 병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의 사각표시를 보면 '右當事者間 ノ隆熙二年'라고 하여 한자와 일본어 조사인 'ノ'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일본어 조사 'ノ' 옆에 한글로 'ノ'를 '의'로 번역해서 부기하였다. 이 시기의 판결문은 이전에 붓에 한지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서양식 종이에 펜으로 판결문을 작성하였다. 보통

www.kci.go.kr

검은색 펜으로 작성하였는데, 붓과 펜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 예시한 판결문의 원본은 보라색 잉크를 사용하여 펜으로 작성한 점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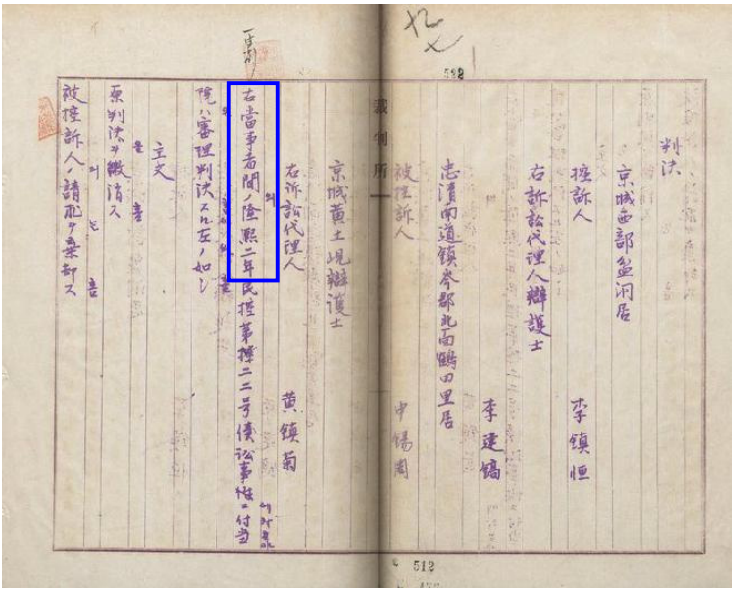

<그림 9> 경성공소원 민사판결문 이미지
출처: 경성공소원 1908년 민사판결문 원본철

넷째, 일본어만 사용한 경우로서, 일제강점 이후에 나타나는 사례이다. <그림 10>은 1910년 경성지방재판소의 판결문 이미지인데, 내용 전체를 일본어로 작성하였다. 이전 판결문과의 큰 차이점은 판결문 작성 용지가 아예 인쇄되어 나오고, 중간 중간 기술할 내용만 수기로 작성한 점이다. '訴訟費用確定決定原本'이라는 표제 역시 이미 인쇄되어 나왔고, <그림 10>의 사각표시를 보면 '裁判長判事', '判事' 등의 글자가 이미 인쇄되어서, 판사는 그 밑에 본인의 이름만 손으로 기입하고 날인하였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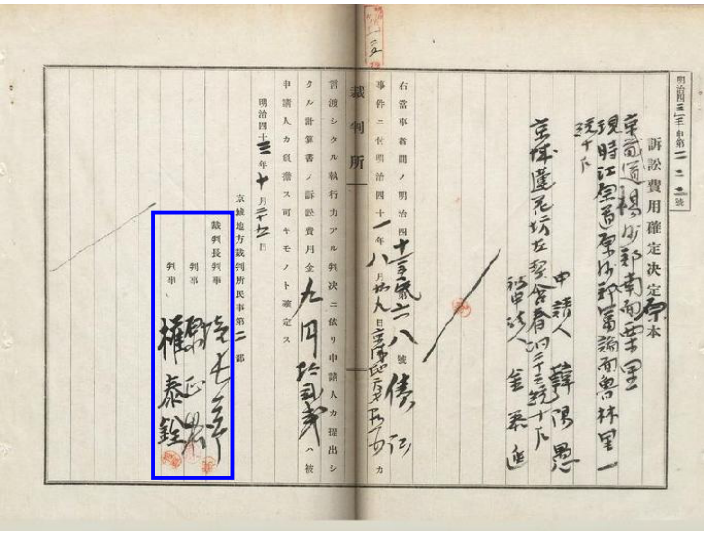

<그림 10> 경성지방재판소 민사판결문 이미지
출처: 경성지방재판소 1910년 민사판결문 원본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판결문은 비록 짧은 시기이지만 그 시기에 따라 그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판결문의 서사재료와 사용 언어 역시 당시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2.1.2 민사판결문 구성요소

민사판결문은 구술로 진행되는 민사재판 과정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당사자 간에 재판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다. 판결문의 작성 양식은 「민형소송규정」(1895)에 나온 이후 법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적인 변동은 있었지만, 그 양식상에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단지, 판결문만 보아도 재판의 전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점차 자세하게 기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www.kci.go.kr

민사판결문의 구성요소는 양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구성요소는 ①사건번호, ②사건명, ③원고, ④피고, ⑤판결요지, ⑥이유, ⑦판결일자, ⑧재판소명, ⑨판사명, ⑩주사(참여자)명 등 10가지로 볼 수 있다. 광무 3년(1899년) 한성부재판소에서 판결한 민사판결문의 예를 들어보면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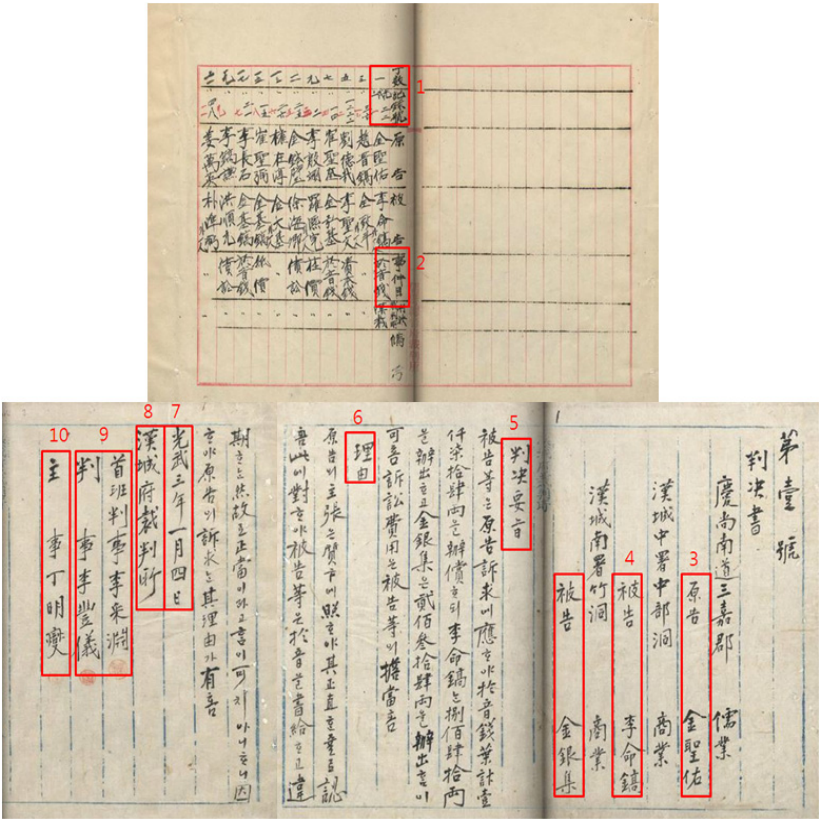

<그림 11> 한성부재판소 민사판결문 이미지

출처: 한성부재판소 광무3년 민사판결문 원본철

www.kci.go.kr

위에서 예시한 민사판결문의 구성요소와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사건번호: 광무 3년 제1호, ②사건명: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 ③원고: 김성우, ④피고: 이명호, 김은집, ⑤판결요지: 피고 등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어음금인 엽전 1074냥을 갚되, 이명호는 840냥을 마련하고 김은집은 234냥을 마련해야 함, ⑥이유, ⑦판결일자: 1899년 1월 4일, ⑧재판소명: 한성부재판소, ⑨판사명: 이채연, 이풍의, ⑩주사(참여자)명: 주사 정명섭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판결문에는 이 외에도 원고나 피고의 나이나 신분, 주소 등 당사자명 외에 더 자세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판결요지나 이유 등이 조금 더 간결하거나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등의 차이만 있을 뿐 형식상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2.2 민사판결문 목록 작성 및 키워드 분류

법원도서관에서는 2009년 법원기록보존소에 소장된 1889년에서 1918년까지의 민사판결 원본 151책을 대상으로 '구한말 민사판결문 응용시스템(http://khd.scourt.go.kr)'을 구축하였다. 필자는 연구의 기초단계로서 이 시스템에 수록된 원문이미지 전체를 일일이 검토하여, 구성요소를 추출한 다음, 한성재판소의 민사소송 판결문 6,352건을 대상으로 그 목록을 작성하였다. 판결문에는 ①사건번호, ②사건명, ③원고(인명, 나이, 신분, 주소, 대리인), ④피고(인명, 나이, 신분, 주소, 대리인), ⑤판결요지, ⑥이유, ⑦판결일자, ⑧재판소명, ⑨판사명, ⑩참여자명 등 10개의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사건명, 재판소명, 판결일자, 사건번호 등 4개의 정보를 분석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사건명은 판결문 내용과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판결일자는 시기별 추이를 제시해주며, 재판소명은 지리적 특수성 유무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사건번호는 사건명이 동일할 경우 판결문 간의 구분을 위한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항목에서 원고, 피고, 판사명, 참여자명을 제외한 이유는 재판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 시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국가기록원에서도 고등법원과 평리원에서 생산된 민사판결원본을 일부 소장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온라인상에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판결요지는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사건명으로 갈음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건명, 재판소명, 판결일자, 사건번호 등 4개 요소를 대상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주제별로 분류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판결문 원문이미지에서 사건명, 사건번호, 재판소명, 판결일자를 추출하여 6,352건의 근대 한국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일부는 <표 1>과 같다.

<표 1>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목록(일부)

순번	사건명	사건번호	재판소명	판결일자
1	환전(換錢) 소송에 관한 건(換錢訟)	광무(光武) 원년 민제1043호	한성부재판소 (漢城府裁判所)	1897년 09월 30일
2	가옥(家舍)소송에 관한 건(家舍訟)	광무(光武) 원년 민제25호	한성부재판소 (漢城府裁判所)	1897년 11월 25일
3	채권·채무소송(債訟)에 관한 건(債訟)	광무(光武) 원년 민제46호	한성부재판소 (漢城府裁判所)	1897년 12월 03일
4	고깃값(肉價殘)에 관한 건(肉價殘)	광무(光武) 원년 민제20호	한성부재판소 (漢城府裁判所)	1897년 12월 10일
5	좌염값(坐鹽價)에 관한 건(坐鹽價)	광무(光武) 원년 민제65호	한성부재판소 (漢城府裁判所)	1897년 12월 11일
6	어음 대금(於音金)에 관한 건(於音金)	광무(光武) 원년 민제1088호	한성부재판소 (漢城府裁判所)	1897년 12월 14일
7	장작값(長斫價)에 관한 건(長斫價)	건양(建陽) 2년 민제890호	한성부재판소 (漢城府裁判所)	1897년 12월 20일
8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於音錢)	광무(光武) 원년 민제413호	한성부재판소 (漢城府裁判所)	1897년 12월 21일
9	채권·채무소송(債訟)에 관한 건(債訟)	건양(建陽) 2년 민제781호	한성부재판소 (漢城府裁判所)	1897년 12월 22일

www.kci.go.kr

둘째, 민사판결문 목록에 수록된 6,352건의 사건명을 대상으로 키워드 추출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단어의 단수와 복수 형태 교정, 조사 제외 등 정규화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사건명 중 단어로 볼 수 있는 명사를 대상으로 총 762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셋째, 이 762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1」의 기준에 의거하여 10개의 사건 그룹으로 구분하는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의 사건명에 여러 개의 키워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추출한 키워드를 모두 사용하여 단순히 빈도 수로 사건분포를 파악할 경우 하나의 사건이 중복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은 한 건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사건명에서 추출한 모든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판결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 키워드만을 선정하여,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주제에 맞게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접미어가 '값'인 경우 값 앞에 붙은 단어의 주제에 따라서 해당 주제에 분류하였고, 다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금전에 분류하였다.

키워드의 분류작업은 근대 한국 시기를 관통하는 사법통계가 일원화되어 전해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전 자료 중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1」에서 구분한 내용을 기준으로 인사, 토지, 건물, 선박, 금전, 미곡, 물품, 증권, 분묘, 기타 등 10개의 사건그룹으로 나누어 해당 키워드를 일일이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주제 분류 및 해당 키워드

사건 그룹명	사건 수	키워드 개수	키워드 종류
인사	6	2	서자, 혼인
토지	474	53	갈밭, 경작지, 계약지, 공유지, 기지, 논, 논값, 논밭, 논밭값, 늑탈답, 답토, 둔토, 둔토값, 물자리, 물자리값, 물터값, 민보, 밤나무밭값, 방, 밭, 밭값, 밭농사, 보, 부동산, 분토, 산, 산림, 순무밭, 시장, 어장값, 어전, 역답, 우물자리, 원림, 인삼밭, 장토, 장토값, 전답, 전답값, 전장, 전토, 지단, 지단값, 집터, 집터값, 채소밭, 채전값, 택지, 터, 텃밭, 토지, 풀밭, 풀밭값
건물	421	28	가옥, 가옥값, 고마방, 공대, 교사값, 누룩가게, 담장, 마구간, 목욕탕, 보동, 빈집, 셋돈, 유판, 임대, 임대차, 전세, 전세값, 전세금, 전세돈/전셋돈, 점포, 점포값, 정자, 집값, 집세, 창고, 푸주, 푸줏간, 학교
선박	39	7	뗏목값, 배, 뱃값, 선박값, 선장, 선척, 증선

www.kci.go.kr

사건 그룹명	사건 수	키워드 개수	키워드 종류
금전	3,995	198	가격, 가계전, 가마삯, 가산, 가하전, 갈대값, 갈밭세, 강탈금, 개축비, 건축비, 결미전, 결산금, 결세금, 결세전, 결축전, 결획전, 계약금, 계통전, 계항전, 곗돈, 고용 보수금, 공납전, 공사 도급금, 공역전, 공임, 공탁금, 관황전, 구상금, 금액, 급료, 급여, 기탁금, 남교금, 남봉전, 납채전, 노역비, 녹대전, 녹전, 뇌물, 늑징전, 늑취전, 늑탈금, 늑탈전, 담당금, 담보금, 대가, 대금, 대동세, 대상금, 대위변제금, 도급금, 도급전, 도식전, 도조전, 돈, 동업전, 둔결전, 모탈전, 몰수금, 반제금, 방고전, 배당금, 백징전, 벌목값, 벌초값, 범용전, 변상금, 변제금, 보관금, 보관료, 보세, 보수금, 보수세 보증금, 부금, 부비, 분리금, 비용, 비용금, 사취금, 상납금, 선급금, 선봉전, 선불금, 선상납금, 선진배전, 세금, 소비전, 소입전, 손해금, 손해배상금, 손해비용, 수고비, 수당금, 수리비, 수수료, 수표, 수표금, 암용전, 압류금, 약속어음금, 약정금, 약탈금, 양육비, 어음, 어음금, 어음전, 억류금, 역비전, 역황전, 예금, 예매금, 예치금, 와자전, 요미전, 운동비, 원조전, 월급, 월세금, 위약금, 위전가, 위탁금, 이득금, 이익금, 이익배당금, 이자, 이잣돈, 인지값, 인지대금, 임금, 임대금, 임대료, 임치금, 입체금, 입환금, 자금, 자본금, 잔금, 잔액, 재산, 잿돈, 저리가, 적립금, 전당금, 전당채, 전수금, 전수전, 절류금, 정세전, 조염값, 족징금, 좌염값, 주식값, 주인값, 중개료, 증거금, 지세, 지폐, 짐삯, 징납금, 징수금, 차용전, 채권, 채무금, 처리비, 체납금, 체징금, 추가비용, 추용금, 추용전, 축미값, 축상비, 출자금, 출통곗돈, 출통전, 취하금, 치료비, 탈취금, 토역비, 퇴권전, 투식전, 판매금, 편거전, 포조가, 품삯, 해산물세, 해세, 호둔가, 혼수비용, 화리가, 환금, 환불, 환완, 환전, 환퇴, 회계, 횡령금, 횡징전
미곡	228	44	결세조, 곡물, 곡식, 곡식값, 공물값, 공미값, 녹미, 누런콩값, 대미, 도곡값, 도조, 도조값, 도조곡, 도조세, 들깨값, 메밀값, 무미값, 미곡, 밀가루값, 밀값, 백미, 벼, 벼값, 보리, 분금조, 쌀, 쌀값, 외획조, 응역조, 이잣쌀, 임치미, 임치조, 정미, 정조, 조곡, 좁쌀값, 종자, 참깨값, 찹쌀값, 추수곡, 추수조, 추조, 콩값, 팥값
물품	693	246	가발, 가죽값, 가지값, 갑주, 갓, 갓값, 게, 고깃값, 고령토값, 고마값, 곶감값, 과일값, 관복, 교량, 구목, 구목값, 구차값, 국수값, 금, 금가락지, 금값, 급수과, 기계, 기름값, 기와, 기와값, 기탁물, 꿀값, 나무값, 나무제품, 나물, 나뭇값, 나침반값, 노방주, 노새값, 녹용, 녹용값, 누룩, 누룩값, 누주목값, 당나귀, 당나귀값, 당나귀새끼, 당목값, 대추, 동값, 동목값, 동산, 동철값, 땔감, 땔감값, 땔나무, 땔나무값, 뗏목, 띠값, 마삯, 마차, 마필, 마호수, 말, 말값, 말먹이값, 말총값, 망건값, 매현, 메주값, 명주값, 명주실값, 모시값, 모직물값, 목기값, 목재, 목재값, 목탄, 무값, 무명값, 물건, 물건값, 물품, 물품값, 미목값, 미역값, 밀감값, 밀기울값, 반지, 발면기값, 밤나무값, 밥값, 방적사, 배추, 배추값, 백삼, 백양목값, 백탄값, 백태값, 베값, 벽돌, 벽돌값, 보철금, 복장비, 부목, 부책, 북어값, 사금, 사인교값, 사토값, 산동주값, 산삼값, 삼베값, 상포값, 상품, 상품값, 생강, 생강값, 서까래, 서까래값, 서적, 석분값, 석유값, 석재, 석재값, 석탄, 석회, 석회값, 설탕값, 섬사주값, 소, 소값, 소금, 소금값, 소나무값, 소주, 소주값, 솔가지값, 솜값, 솜틀기, 송수값, 송추, 송축, 송판값, 송회, 솥, 쇠가죽값, 쇠고기값, 쇠솥값, 수도, 수레, 수목, 수목값, 수삼값, 순무, 술값, 숭채가, 시계, 시계값, 식대, 식량값, 식비, 식염, 신문, 신발, 신발값, 실값, 쌀새우, 쌀새우값, 안경값, 약값, 약장, 약재, 약품, 양가죽, 양복, 어물, 어물값, 얼레빗값, 역서값, 연상, 연초, 연초값, 오이값, 옥대, 옷, 옷감, 옹기값, 왜사값, 요리값, 우물, 원보, 유기값, 유체동산, 유체물, 은, 은값, 은자, 음식, 의관, 의복, 의복류, 의복봉, 이불, 인력거값, 인삼값, 인삼대금, 입목, 잎담배값, 자전거, 장목값, 장작, 장작값, 장화, 재목값, 재봉틀, 재화값, 전당물, 전복, 조기, 조기값, 종이값, 종자값, 주목, 주자판, 줄값, 지료, 지물, 집기, 집물, 참기름값, 채소, 책값, 책상, 철물값, 청어값, 청채값, 콩, 탄값, 탕건, 패물값, 포대, 포대값, 포목, 포목값, 표목, 표목값, 해산물값, 홍삼, 홍합값

www.kci.go.kr

사건 그룹명	사건 수	키워드 개수	키워드 종류
증권	249	15	구문서, 논문서, 늑봉표, 늑표, 문서, 밭문서, 보표, 위임장, 적치표, 증명서, 증서, 집문서, 차용증, 표전, 표지
분묘	134	18	굴총, 매장, 묘, 묘막, 묘지, 무덤, 분묘, 비석값, 산판, 송추값, 암장, 위답, 위전, 위토, 이장, 종전, 치표, 투장무덤
기타	111	151	가마꾼 , 가석방, 가압수, 가차압, 강제, 강제집행, 개조, 개축, 결정, 경계, 계약, 교부, 구상, 기타, 낙조, 늑장, 늑탈, 단보, 담당, 담보, 대위변제, 대중, 도장, 동업, 둔감, 등기, 등록상표, 마름, 말소, 매도, 매매, 맹인, 명도, 명령, 명예회복, 명의변경, 목수, 몰수, 무효, 반환, 발환, 방매, 배당, 배상, 벌목, 변상, 보증, 보행, 부당, 부존재, 부친, 분담, 분배, 분실, 분재, 분할, 불법, 불법행위, 불복, 사기, 사기행위, 사무, 사용권, 상계, 상납, 상업, 상환, 석방, 선출판권, 설정, 소송, 소유, 소유권, 손해, 손해배상, 송환, 수속, 신청, 압류, 양도, 어과주인, 역공, 연대, 영수, 완공, 외상, 위약, 위탁, 유기, 유치, 의무, 이득, 이사, 이의, 이전, 이해, 이행, 인도, 인쇄공정, 임방회, 임원, 임치, 입지, 잉여, 잠봉, 재산분할, 재심, 저당권, 적치, 전당, 전당권, 점유권, 제패, 조합, 조합원, 주인, 증명, 지분, 지불, 집안일, 집행, 징수, 차압, 처리 , 철폐, 청구, 체류, 최소, 추가, 추멱, 추수, 추수권, 추심, 축조, 출포, 취소, 침해, 파견원, 파기, 판매, 피소, 항고, 항소, 해산, 해제, 행위, 확인, 확정, 환급, 회사, 회주

위의 키워드 분류결과를 살펴보면, 금전관련 사건이 3,995건에 키워드 198개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관련 사건이 693건에 키워드 246개, 토지관련 사건이 474건의 54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인사관련 사건은 사건 수 6개에 키워드 2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사건 분포의 실제

여기에서는 전장에서 분류한 내용을 토대로 한성재판부 6,352건의 민사판결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분석과 사건별 분석을 시도했다.

3.1 연도별 분석

이 연도별 분석은 사건들의 연도별 변천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도

www.kci.go.kr

해 본 것이다. 먼저 사건 그룹으로 분류한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사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표 3> 연도별로 본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사건

연도	인사	토지	건물	선박	금전	미곡	물품	증권	분묘	기타	제외	계
1895	2	9	4		156	14	28	5	2			220
1896		24	33	1	306	25	60	9	3			461
1897		25	19	1	181	17	61	4	4			312
1898		23	12	3	103	13	30	4	3			191
1899		31	17	4	250	32	65	13	4			416
1900		14	4		39	2	5	1	1	1		67
1901		14	12	1	95	2	17	10	1			152
1902		12	17	2	125	7	20	10	1			194
1903		14	19	1	146	7	18	9	5			219
1904		12	12		93	6	36	15	2			176
1905		35	34	7	207	18	46	36	7	1		391
1906		32	64	7	479	34	129	55	7			807
1907		59	39	4	369	19	67	37	12	1	2	609
1908	1	45	31	6	397	16	47	24	28	33		628
1909		73	57	1	614	14	45	11	33	34		882
1910	3	52	47	1	430	2	19	6	21	41		622
1911					4							4
1912					1							1
합계 (건)	6	474	421	39	3,995	228	693	249	134	111	2	6,352
비율 (%)	0.1	7.6	6.6	0.6	62.9	3.6	10.9	3.9	2.1	1.7	0	100

그리고 연도별 전체 사건 수 대비 사건 그룹별 연도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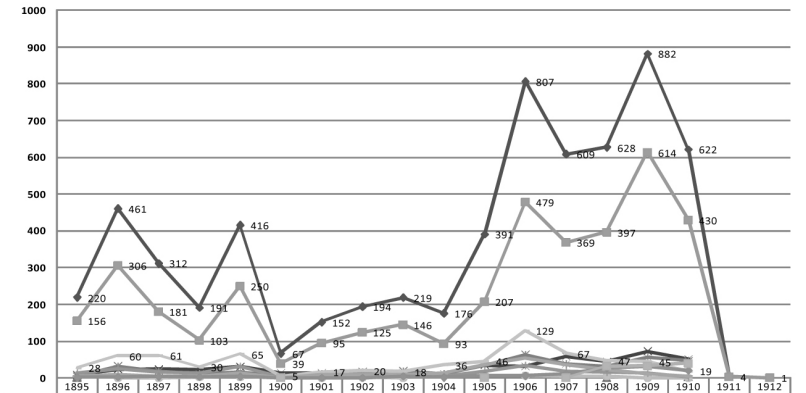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전체	220	461	312	191	416	67	152	194	219	176	391	807	609	628	882	622	4	1
인사	2													1		3		
토지	9	24	25	23	31	14	14	12	14	12	35	32	59	45	73	52		
건물	4	33	19	12	17	4	12	17	19	12	34	64	39	31	57	47		
선박		1	1	3	4		1	2	1		7	7	4	6	1	1		
금전	156	306	181	103	250	39	95	125	146	93	207	479	369	397	614	430	4	1
미곡	14	25	17	13	32	2	2	7	7	6	18	34	19	16	14	2		
물품	28	60	61	30	65	5	17	20	18	36	46	129	67	47	45	19		
증권	5	9	4	4	13	1	10	10	9	15	36	55	37	24	11	6		
분묘	2	3	4	3	4	1	1	1	5	2	7	7	12	28	33	21		
기타						1					1		1	33	34	41		

<그림 12> 근대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전체 및 사건 그룹별 연도 추이

위의 표와 그래프에 나타난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의 연도별 변천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96년 461건에서 1898년 191건으로 사건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1897년 「한성재판소관제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경기도까지 관할하였던 한성재판소가 한성부재판소로 변경되면서 관할 구역이 한성 5서 즉 동서, 서서, 남서, 북서, 중서로 한정되고, 경기도 지역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4)]

둘째, 1899년의 사건 수 416건에서 1900년에 사건이 67건으로 급감한 데 비해, 1901년(152건)부터 1904년(176건)까지는 사건 수에 큰 변동이 없는 양상을 보인

4)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서울: 역사와 비평사, 2010), 239.

www.kci.go.kr

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재판소의 설치 및 폐지가 계속되는 등 사법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였으며[5], 정치적으로도 사회제도가 보수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당시 외형적으로는 근대적 재판제도의 요소가 도입되었으나 소송당사자 및 재판담당자의 관념과 재판 실질 면에서는 전통적 요소가 강고하게 작동된 시기였기 때문이다.[6]

셋째, 대부분 전체 사건 연도별 추이와 각 사건 그룹의 연도별 추이가 유사한 그래프 모양을 보이지만, 민사판결문 수에서 금전관련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넷째, 주로 민사집행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사건의 경우 1908년 33건(29.7%), 1909년 34건(30.6%), 1910년 41건(36.9%) 등 특히 1908년부터 1910년 사이에 기타 사건 그룹 전체의 97.2%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1907년 제정된 「민형소송규칙」에서 가압류・가처분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치결정, 유치명령 사건은 1908년과 1909년 2년 동안에만 보이는 독특한 사건인데 유치제도가 1907년 도입되었다가 1909년 「민형소송규칙개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7]

3.2 사건별 분석

여기에서는 한성재판소의 민사판결문 6,352건을 인사, 토지, 건물, 선박, 금전, 미곡, 물품, 증권, 분묘, 기타 등 10가지 사건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금전관련 사건이 3,995건(6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 693건(10.9%), 토지 474건(7.5%), 건물 421건(6.6%), 증권 249건(3.9%), 미곡 228건(3.6%), 분묘 134건(2.1%), 선박 39건(0.6%), 인사 6건(0.1%) 등의 순이었다. 이들 사건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법원행정처, 「법원사」 (서울: 법원행정처, 1995), 233-238.
6) 문준영, "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법사학연구」 46(2012a), 249.
7) 문준영, "한국의 형사사법과 민사분쟁형 고소사건 : 구한말과 일제시대의 경험," 「법학연구」 48-1(2007), 1411-1412.

www.kci.go.kr

1) 금전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의 3대 소송은 산송, 토지, 노비관련 사건을 드는데, 근대 한국의 경우는 금전관련 사건이 제일 많았다. '구한말 민사판결문 응용시스템'에 수록된 민사판결문은 총 14,587건인데 이 중 금전관련 사건은 11,013건(75.4%)이었으며, 한성재판소의 경우도 총 6,352건의 사건 중 금전관련 사건이 3,995건(6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금전관련 사건은 크게 채권・채무 사건과 그 외의 금전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채권・채무사건은 2,074건(51.9%)이며, 그 외의 금전 사건은 1,921건(48.1%)으로 대략 각각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채권・채무 사건의 경우 사건명이 단순 '채권・채무 소송에 관한 건'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판결요지를 통해 사건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채무금 얼마를 갚아야 한다거나 피고인은 원고의 청구를 따를 이유가 없다거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채무금은 지폐 00원/환, 당오평(當五坪)/당전(當錢)/당오전(當五錢) 00냥 등 다양하게 기술되어 당시 사용하던 화폐 단위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1905년 이후에는 한화(韓貨) 혹은 일화(日貨)로 기술되는 경우도 있었다.

채권・채무 사건 외의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것은 단순 대금청구 사건 513건(그 외의 금전 사건 중 26.7%)과 어음(약속어음 등)관련 사건 501건(26.0%)이었다. 그 밖에 조선시대에 보이지 않았으나 새롭게 등장한 것은 자본금, 동업자금, 출자금 등 기업관련 사건이다. 조선시대에는 회사라는 개념이 없었으나 대한제국기부터 각종 은행과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소송이 발생한 것이다.

그 외의 금전사건으로 눈에 띄는 것은 지금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계(契)에 관한 것이다. 계는 친목도모와 목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들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해지면서 활발해졌다.[8] 곗돈 외에 출통곗돈, 출통전 등이 보이는데, 출통(出筒)은 통계(筒契)에서 계알을 흔들어 뽑아낸다는 뜻으로서 출통계는 일제 강점기에 서울의 육의전의 상인 등이 설립한 계모임이다. 이 출통계

8) 변태섭, 「한국사요론」 (서울: 삼영사, 1973), 378.

www.kci.go.kr

는 도박계라고도 하는데, 적은 금액으로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계에 참여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하여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고,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당시 유행하던 출통계의 폐단에 대한 기사가 실릴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9)]

2)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관련 사건은 895건(전체의 14.1%)으로 금전관련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토지나 가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06년까지는 「토지 건물의 매매, 교환, 양여, 전당에 관한 건」, 「토지가옥증명규칙」 등 토지, 건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12년 일본이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잇달아 공포하여 일본의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조선에 의용하도록 하면서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10)] 부동산 사건 중 토지관련 사건은 474건(52.9%)이고, 건물관련 사건은 421건(47.0%)으로 토지 사건의 비중이 약간 높다. 토지관련 사건은 단순 논소송・전답 소송 등이 214건(45.2%)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논값・토지대금 등이 94건(19.8%)이었다. 토지 양도・인도 등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86건(18.1%)이었으며, 물자리・보 등에 관한 소송이 28건(5.9%) 있었다.

건물관련 사건은 가옥, 전세금, 전셋돈 등 전세와 관련된 것이 171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단순 가옥 소송 사건이 108건(25.7%)이었다. 그리고 가옥값・집값 등 가옥 대금관련 사건은 79건(18.8%), 가옥 명도와 관련된 것은 28건(6.7%)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농경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백성들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재산은 토지였으며 특히 토지의 소유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11)] 한편 건물관련 사건은 대부분 전세와 관련된 것이었다. 전세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볼

9) 김필동, 「한국사회조직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2), 309.
10)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I」 (서울: 법원행정처, 2015), 18-19.
11) 김상용, 「한국법사와 법정책」 (경기: 피앤씨미디어, 2014), 91.

www.kci.go.kr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12] 문준영[13]은 전세의 특징을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미리 집 값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가세금을 사전에 지급해 준다는 것으로 보았는데, 당시에도 가세금을 회수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았던 것이다.

3) 물품

물품관련 사건은 백성들의 의(依), 식(食) 등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693건(전체의 10.9%)이 나왔다.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것은 소, 말 등 가축과 관련된 사건이 97건(14.0%)이다. 소관련 사건은 65건, 말관련 사건은 26건, 당나귀관련 사건은 6건이다. 당시에 소가 큰 재산으로 취급되고, 말이 운송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많은 분포를 차지한 것은 단순 물건값, 물품대금이나 물품 반환 등에 관한 사건으로 88건(12.7%)이었다. 그 다음 밥값 32건, 고기관련 8건, 소주값 및 술값이 10건이었다. 밥값이나 술값 외에도 잎담배값이 12건 있었다. 이들 사건은 당시 한성에서 유흥문화의 성행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미 18세기 한성은 도시의 성격이 상업 도시로 바뀌면서 새로운 도시문화가 형성되었다. 평민들은 유교적 명분보다는 경제 활동을 중시하였고, 상업화된 도시에서는 유흥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6만호를 이르는 서울의 가호 중에 1만호 이상이 술집이고, 대형 주점이 수천 호에 달할 정도로 주점, 음식점, 기방 등이 번창하였던 것이다.[14]

4) 증권

증권관련 사건은 249건(3.9%)이 나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증권이란 현대적 개념의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유가 증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12) 곽윤직, “전세권제도에 대한 약간의 고찰,”「법학」 3-2(1962), 264.
13) 문준영, “구한국기의 임대차 분쟁과 전세 관습: 민사판결자료를 통한 접근,”「법사학연구」 48(2013), 175.
14) 고동환, “서울 도시공간의 변동: 상업발달과 관련하여,”「서울학연구」, 52(2013) 159-160.

www.kci.go.kr

의미로 서면에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 등을 기재한 문서나 문기 또는 증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옥, 집문서관련 사건이 166건 (6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논・밭・전답문서 54건(21.9%) 순이다.

조선시대에 이미 경지, 가옥, 산지 등의 부동산, 노비 그리고 공인, 객주 등의 권리와 같은 중요한 재산을 매매할 때 명문(明文), 문기(文記), 문권(文券)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15], 이를 증권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의 경우 각종 권리 문서 중에서 대부분 집문서에 관련된 사건이다. 한성이 도시 지역이었기 때문에 논이나 밭문서보다 집문서에 관한 소송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개항기 이후 외국인들도 부동산 매매 거래와 전세 계약 등을 맺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이 종종 발생하였던 것이다.[16]

한편, 1898년에 한성전기(주)가 설립된 것 같이, 대한제국기에도 주식회사가 존재하기 시작하였으며, 1896년 조선은행, 1897년 한성은행, 1899년 대한천일은행 등 민간은행이 설립되면서 화폐금융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은행 설립 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를 모았으나, 대한제국기에 중앙은행이 없었으며, 1905년 일본의 제일은행에 대한제국의 화폐 정리에 관해 일임함으로써 사실상 주식이 거래되지는 않았다. 이후 본격적인 증권거래가 제도권으로 편입된 것은 1920년이 우리나라 최초의 증권거래소로 볼 수 있는 경성주식현물취인소가 세워진 이후의 일이다.[17]

5) 미곡

미곡관련 사건은 228건(전체의 3.6%)이었다. 이 중 쌀값 등 곡식 대금과 관련된 사건이 140건(61.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판결 내용은 대부분 원고의 청구에 따라 쌀값 몇 냥을 변상하라는 내용이었다. 1895년, 1896년 등 초기에는 주로 쌀값 자체만 변상하였으나, 1905년 이후에는 관변(官邊) 이자나 연리 몇

15)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서울: 역사와 비평사, 2013), 122.
16) 이승일, "대한제국기 외국인의 부동산 전당 및 매매와 민사 분쟁: 헐버트의 가옥 분쟁(1900-1902)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9(2014), 89-92.
17) 국사편찬위원회, 「개화기의 금융」 (경기: 국사편찬위원회, 2013), 466-546.

www.kci.go.kr

푼의 이자를 함께 변상하라는 등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많이 보였다.

이밖에 쌀 도조, 추수 도조 등과 관련된 사건이 37건(16.2%) 있었다. 도조(賭租) 혹은 도지(賭地)는 지주의 논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혹은 지대를 의미한다.[18] 토지를 소유한 농민도 있었지만, 지주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지었던 소작농들이 생기면서 도조, 도조 비용 등에 관한 소송이 생겼다.

한편 사건명이 미조송(米租訟)이나 조송(租訟) 같은 단순 쌀소송인 것은 13건(5.7%)이었다. 광무(光武) 10년 제22호 미조송(米租訟)을 살펴보면 피고는 백미 1석, 벼 15석 4두를 변상한 후, 압류된 해당 선박을 찾아가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광무(光武) 10년 민제258호, 제722호 조송(租訟)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박을 내주고, 결손 낸 벼 포대 42석 11두 2승은 추심하라고 판결하여 당시에 압류, 추심 등을 통해 채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분묘

분묘관련 사건은 134건(2.1%)이었다. 단순 사건명이 산 소송, 분묘 소송 등인 것이 67건(50.0%)으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무덤이장에 관한 것이 23건(17.2%)으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조상의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한 위토(位土)와 관련된 것이 16건(11.9%)이었다. 산소 근처에 심는 나무를 의미하는 송추(松楸)와 관련된 사건은 13건(9.7%)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묘관련 사건은 사건명이 단순 산송(山訟)이 가장 많았고, 암장(暗葬)에 대한 이장 청구 사건, 묘지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등이 있었다.

산송은 풍수지리가 유행하면서 명당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조선 중기부터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 조선 후기에는 3대 소송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많아졌다. 토지나 노비에 대해서는 사유(私有)를 인정하였지만 산지에 대해서는 소유가 아닌 점유(占有)로 인정하여 오히려 각종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산지(山地)의 점유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 급기야 고종은 궁가나

18) 조윤선, 「조선시대 소송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2), 326.

www.kci.go.kr

양반들이 규정보다 넓게 무덤 구역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19]로 당시 그 폐해가 심각했던 것이다.

한성재판소의 경우,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전체의 분묘 사건 분포와 비교하면 분묘와 관련된 소송이 적었다.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전체로 볼 때, 분묘관련 사건은 600건(4.1%)으로 금전관련 사건, 부동산관련 사건 다음으로 3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한성재판소의 경우는 134건(2.1%)으로 5번째에 해당하였다. 한성이 상업 중심의 도시지역이어서 지방에 비해 묘터가 적었고, 첨예한 분쟁의 경우는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0]

7) 선박

선박관련 사건은 39건(전체의 0.6%)이었다. 뗏목대금, 뗏목값, 배삯 등 금전에 관련된 사건이 20건(51.3%)이었고, 뗏목, 배, 선척, 진선 등 선박 자체에 관한 사건은 19건(48.7%)이었다.

선박관련 사건이 0.6%에 불과한 이유는 한성의 경우 부산, 인천, 원산 등 개항장이 아니었고, 주요 교통수단도 선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박과 관련한 사건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8) 인사

인사관련 사건은 6건(0.1%)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현대에서 인사라는 단어는 흔히 경영학에서의 인사 제도 등 행정적인 의미로서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란 의미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인사는 과거의 호적, 즉 현재의 가족관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서자확인, 이혼 청구소송, 친족・상속 등 가족법에 따른 가사소송을 의미한다. 이 인사 사건은 서자확인 소송이 3건(50.0%), 혼인 확인 소송이 1건(16.7%) 있었다.

---

19) 전경목, "산송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사법제도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 18(1997), 7-11.

20) 김항기, "갑오개혁기(1894-1896) 민사소송제도의 시행과 '사권' 신장," 「한국근현대사연구」 67(2013), 241.

www.kci.go.kr

9) 기타

다른 사건 그룹에는 민사본안에 해당하는 사건을 분류하였지만 기타 사건에는 대부분 현재의 민사집행에 해당하는 사건을 분류하였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치결정과 유치명령사건이 33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 집행 사건이 21건(18.9%)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소유권관련 사건 13건(11.7%), 계약이행(청구)관련 사건 9건(8.1%) 등이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에서 구축한 '구한말 민사판결문 응용시스템(http://khd.scourt.go.kr)'에 수록된 1895년부터 1912년까지의 근대 한국 한성재판소의 민사판결문 6,352건을 대상으로 그의 현황 분석을 통해 당시의 민사소송 사건 분포와 사건 양상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판결문의 양식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사판결문의 명칭, 서사재료, 사용 언어 등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거기에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둘째, 민사판결문의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그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판결문의 작성 양식은 법이 바뀔 때마다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형식상의 큰 차이는 없어서, 민사판결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①사건번호, ②사건명, ③원고, ④피고, ⑤판결요지, ⑥이유, ⑦판결일자, ⑧재판소명, ⑨판사명, ⑩주사(참여자)명 등 10가지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이 중 사건명, 재판소명, 판결일자, 사건번호 등 4개의 정보를 분석 항목으로 선정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셋째, 사건명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분류작업을 수행하였다. 사건명 중 단어로 볼 수 있는 명사를 대상으로 762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1」의 기준에 의거하여 인사, 토지, 건물, 선박, 금전, 미곡,

www.kci.go.kr

물품, 증권, 분묘, 기타 등 10개의 사건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분류한 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연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896년 461건에서 1898년 191건으로 사건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1897년 「한성재판소관제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할권이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1899년도의 416건에 대비해서 1900년도의 사건이 67건으로 급감한 이후 1901년 152건에서 1904년 176건까지 사건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당시 재판소의 설치 및 폐지가 계속되는 등 사법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연도별 전체 사건 수 대비 사건 그룹별 연도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체 사건 연도별 추이와 각 사건 그룹의 연도별 추이가 유사한 그래프 모양을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주로 민사집행 사건이 분류되어 있는 기타사건 중에서 1908년과 1909년 2년 동안에만 유치결정, 유치명령 판결문이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유치제도가 1907년 제정된 「민형소송규칙」에서 도입되었다가 1909년 「민형소송규칙개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분류한 사건의 내용에 대해 사건별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전체사건 6,352건 중 금전관련 사건이 3,995건(6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 693건(10.9%), 토지 474건(7.5%), 건물 421건(6.6%), 증권 249건(3.9%), 미곡 228건(3.6%), 분묘 134건(2.1%), 선박 39건(0.6%), 인사 6건(0.1%) 등의 순이었다.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의 3대 소송은 산송, 토지, 노비관련 사건이었는데,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의 분석 결과 금전관련 사건이 3,995건(전체의 6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농업 중심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물품관련 사건은 단순 물건값・물품대금이나 물건(물품) 반환 등에 관한 사건 외에 농사나 재산으로 취급하던 소와 운송 수단으로 주로 말 등 가축과 관련된 사건이 97건(14.0%)이었다. 유흥문화의 발달로 인한 밥값, 소주값 및 술값, 잎담배값 등과 관련된 사건도 있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송을 포함한 것으로 토지관련 사건은 단순 논 소송・전답 소송 등이 214건(45.2%)으로 제일 많았고, 건물관련 사건은 가옥, 전세금, 전셋돈 등 전세와 관련된 것이 171건

www.kci.go.kr

(40.6%)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관련 사건은 249건(전체의 3.9%)인데 이 중 가옥, 집문서관련 사건이 166건(6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논・밭・전답문서 54건(21.9%) 순이다. 미곡관련 사건은 228건(전체의 3.6%)으로, 쌀값 등 곡식 대금과 관련된 사건이 140건(61.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쌀・ 추수 도조 등 도조관련 사건이 37건(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묘관련 사건은 134건(전체의 2.1%)이었다. 한성재판소의 경우,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전체의 분묘 사건 분포와 비교하면 분묘와 관련된 소송이 적었다.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전체로 볼 때, 분묘관련 사건은 600건(4.1%)으로 금전관련 사건, 부동산관련 사건 다음으로 3번째로 많았으나 한성재판소의 경우는 134건(2.1%)으로 5번째에 해당하였다.

선박관련 사건은 39건(전체의 0.6%)이었다. 한성의 경우는 부산, 인천, 원산 등 개항장이 아니었고, 주요 교통 수단도 선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박과 관련한 사건이 적었던 것이다. 인사관련 사건은 6건(전체의 0.1%)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기타 사건은 유치(留置) 결정・명령사건이 33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 집행 사건이 21건(18.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논문은 근대 한국의 격변기에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양식의 변천과정과 사건 실태에 대해 개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향후 근대 한국시기의 민사판결문 연구자에게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동환. “서울 도시공간의 변동: 상업발달과 관련하여.”「서울학연구」52(2013). 149-175.

곽윤직. “전세권제도에 대한 약간의 고찰.”「법학」3-2(1962). 263-294.

국사편찬위원회.「개화기의 금융」. 경기: 국사편찬위원회, 2013.

www.kci.go.kr

권재문. “전세권의 법적 성질: 구한국기 민사판결에 나타난 전세관습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9(2014). 45-84.

김상용. 「한국법사와 법정책」. 경기: 피앤씨미디어, 2014.

김필동. 「한국사회조직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2.

김항기. “갑오개혁기(1894-1896) 민사소송제도의 시행과 ‘사권’ 신장.” 「한국근현대사연구」 67(2013). 227-258.

문준영. 2007. “한국의형사사법과민사분쟁형고소사건: 구한말과 일제시대의 경험.” 「법학연구」 48-1(2007). 1401-1437.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서울: 역사와 비평사, 2010.

문준영.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판결원본철을 통해 본 한말의 민사분쟁과 재판.”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2011a). 9-77.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문준영.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권력: 관습에 관한 재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2권 제4호(2011b). 229-269.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문준영. “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법사학연구」 46권(2012a). 249-304.

문준영.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법학논고」 39(2012b). 421-460.

문준영. “구한국기의 임대차 분쟁과 전세 관습: 민사판결자료를 통한 접근.” 「법사학연구」 48(2013). 133-216.

법원행정처. 「법원사」. 서울: 법원행정처, 1995.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I」. 서울: 법원행정처, 2015.

변태섭. 「한국사요론」. 서울: 삼영사, 1973.

사법사편찬위원회. 「역사속의 사법부」. 서울: 사법발전재단, 2009.

신 평. “한국의 전통적 사법체계와 그 변형.” 「법학논고」 28(2008). 479-503.

이승일. “민사판결문을 통해 본 근대 한국의 도지권 분쟁과 처리: 평안도·황해도 지역의 분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9(2013). 97-342.

이승일. “대한제국기 외국인의 부동산 전당 및 매매와 민사 분쟁: 헐버트의 가옥

www.kci.go.kr

분쟁(1900-1902)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49(2014). 85-118.
이영록. “광무・건양기 부동산 이중매매 및 이중전당에 관한 연구: 고등재판소 및 평리원 판결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44(2011). 111-141.
전경목. “산송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사법제도 운용실태와 그 특징.”「법사학연구」18(1997). 5-31.
조윤선.「조선시대 소송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2.
한국고문서학회.「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서울: 역사와 비평사, 2013.

www.kci.go.kr